

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
의안 번호	30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이성진 의원 외 2인

□ 주 문

-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

□ 제안이유

-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주요 안건 의결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제2항 및 「제천시의회 회의규칙」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□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「제천시의회 회의규칙」 제78조

붙임 :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부.

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 및 「제천시의회 회의규칙」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◇ 출석일 :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

- 2021. 11. 01. ~ 11. 08. (8일간)

※ 의사일정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추가 및 변경된 날을 출석일로 함

◇ 출석장소 : 제천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

◇ 출석사유

-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

- 안전 처리 등

◇ 출석대상

- 제천시장

- 「제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

참고사항(관계법령)

□ 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제천시의회 회의규칙

제78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개시 24시간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부시장
2.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, 단장, 담당관, 과장<개정 2002.12.20, 2007.2.9, 2008.11.7, 2011.02.11, 2014.10.17>
3.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<개정 2007.9.28>
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직속기관은 시본청의 과장, 사업소는 시본청의 5급 상당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<개정 2002.12.20, 2007.2.9, 2008.11.7>
5.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장<신설 2011.02.11>